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5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 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 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식을 시행규칙

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일 제외 등 입주 준비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